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요강



목차

I. 2025학년도 신·편입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1. 모집일정	1
2. 지원자격 및 입학전형	1
3. 전형요소 및 배점	2
4. 등록금	2
5. 지원절차	2
6. 지원자 유의사항	3
7. 합격자 유의사항	3

II. 2025학년도 신입학 모집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2. 지원자격	4
3. 제출서류	5
4. 서류 발급방법	7
5. 제출방법	8
6. 추가합격자 선발	8

III. 2025학년도 3학년 별도 편입학 모집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9
2. 지원자격	9
3. 제출서류	10
4. 서류 발급방법	12
5. 제출방법	13
6. 추가합격자 선발	13

IV. 2025학년도 편입학(일반편입학) 모집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4
2. 지원자격	14
3. 제출서류	14
4. 서류 발급방법	15
5. 제출방법	16
6. 추가합격자 선발	16

2025학년도 신·편입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1. 모집일정

모집시기 구분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입학사정 기간	합격자발표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예비합격자 발표 및 등록	비고
1학기 모집	1차 모집	2024.12.01.(일)~ 2025.01.07.(화)	2025.01.08.(수)~ 2025.01.12.(일)	2025.01.13.(월)	2025.01.13.(월)~ 2025.01.14.(화)	2025.01.15.(수)~ 2025.01.16.(목)	
	2차 모집	2025.01.17.(금)~ 2025.02.14.(금)	2025.02.15.(토)~ 2025.02.19.(수)	2025.02.20.(목)	2025.02.20.(목)~ 2025.02.21.(금)	2025.02.22.(토)~ 2025.02.24.(월)	
2학기 모집	1차 모집	2025.06.01.(일)~ 2025.07.08.(화)	2025.07.09.(수)~ 2025.07.13.(일)	2025.07.14.(월)	2025.07.14.(월)~ 2025.07.15.(화)	2025.07.16.(수)~ 2025.07.17.(목)	*2학기 모집 인원은 추후 별도 공고함
	2차 모집	2025.07.18.(금)~ 2025.08.13.(수)	2025.08.14.(목)~ 2025.08.18.(월)	2025.08.19.(화)	2025.08.19.(화)~ 2025.08.20.(수)	2025.08.21.(목)~ 2025.08.22.(금)	

※ 상기 모집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모집으로 등록이 마감될 경우 2차 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입학전형

가. 지원자격(공통)

구분	지원자격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2025년 2월 졸업예정포함) 및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단,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편입학	<p>[2학년 편입학] ▶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1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3학년 편입학] ▶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나. 입학전형

구분	유형
정원내 일반전형	보편적 교육 기준에 따른 일반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위탁 ▶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제7호) ▶ 학사편입 ▶ 군위탁 ▶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기회균등

3. 전형요소 및 배점

구분		전형요소 및 배점	합계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중 상위 2개 과목(백분율 환산점수)	100
	검정고시 합격	검정고시 상위 성적 2개 과목(백분율 환산점수)	100
편입학	대학교 졸업	전적대학교 전체 성적 평점(백분율 환산점수)	50
		학업계획작성고사	50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전체 성적 평점(백분율 환산점수)	50
		학업계획작성고사	50

※ 고등학교 평어 전형점수 산출 방법(등급은 원점수 반영)

평어	수	우	미	양	가
등급	원점수 반영				
반영점수	95점	85점	75점	65점	55점

- 학업계획작성고사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업계획의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
- 전형 총점이 30% 미만일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신입학 : 연소자 순으로 결정
 - ② 편입학 : 전적대학교 평점 또는 학점은행제 평점 → 학업계획작성고사 → 연소자 순으로 결정
 - ③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불가능할 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

4. 등록금

전형료	등록금(학점당 70,000원)		
	12학점 기준	15학점 기준	18학점 기준
20,000원	840,000원	1,050,000원	1,260,000원

- 수강신청 학점은 12~18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함(단, 편입학의 경우 전적대학 총평점 평균 3.0이상일 경우 최대 27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 위 등록금은 장학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납부금액이며, 입학서류제출기간에 장학서류 제출 시 선감면 고지됨
-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중복수혜 시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감면하고, 청구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등록금 분할 납부는 학기 중 최대 4회까지 가능
- 무통장입금(부산은행 113-2018-3565-00, 예금주: 화신사이버대학교 황주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 입학금 실비용 분은 등록금에 산입될 예정이며, 입학금 실비용 분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될 예정(외국인 및 지원 대상 제외자는 입학금 실비용 납부 대상)
- ※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절차

절차	학생 지원 절차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링크) ○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모집일정과 전형방법, 유의사항 등 입학과 관련된 정보 확인
원서접수 및 학업계획작성고사 작성	○ 지원구분과 지원학년 등에 유념하여 원서작성(학업계획작성고사는 2, 3학년 편입학만 해당) ※ 작성한 내용은 제출서류와 동일해야 함 ○ 원서제출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며, 안내문자가 발송됨
전형료 납부	○ 카드 납부 또는 무통장입금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미납부 시 불합격 처리됨
서류제출 및 확인	○ 지원유형별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 등기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연산동) 화신사이버대학교 7층 입학홍보처 ○ 서류 도착 여부는 문자로 안내함
합격자 발표	○ 사전에 공지한 합격자 발표일에 발표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격자별 문자 통보함)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후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결제방법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개강 및 수강	○ 신·편입생에게 [대학생활안내책자]가 발송됨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실에서 강의 수강(PC, 모바일 공통)

6. 지원자 유의사항

- 사이버대학교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입학지원서가 최종 접수 완료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기간 중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전화 통화가 두절되어 당해 등록 마감 시한을 넘긴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입학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행위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 재학 및 졸업 후에도 위 내용 확인 시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함
- 각 전형별 산출 총점이 3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등록된 원서는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수정 가능함
- 입학 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으로 본교 전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하며, 납부한 전형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함
- 입학 등록을 완료한 자가 입학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개강일 전까지는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반환함
- 학력미인정고 졸업생(학력인정 지정 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포함)은 대학진학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등에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 ‘공교육정상화추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형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함
- 부정행위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타 모집요강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7. 합격자 유의사항

- 가.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pply.hscu.ac.kr>)에서 조회 가능하며, 합격자 조회는 본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나. 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 다.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재학 중 연 2회, 매 학기 시작 전 재직증명을 확인하여야 함. 특히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함.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또는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함

2025학년도 신입학 모집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명	학부명	학과명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산업체위탁생	군위탁생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제7호)	교육기회균등
사회서비스계열	글로벌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200	200	200	40	40	11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실용드론학과						
	상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복지경영학과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합계		200	200	200	40	40	11	

※ 학과폐과 : 영상콘텐츠학과

※ 상기 인원은 1차 모집인원이며, 2차 모집인원은 1차 모집결과에 따른 결원인원으로 산정

2.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공통	고등학교 졸업(2025년 2월 졸업예정포함) 및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단,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구분	지원자격	
정원외 특별전형	산업체위탁	○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6호)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초중고 전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제7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제7호)	외국 학교 출신 자	12년 이상 학제 국가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일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혼합이수	①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③ 12년 미만의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④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일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①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일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추가서류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류 중 택 1 - 외국인: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 귀화자(국적법 제6조제2항):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특수교육대 상자	관할관청 발행 증명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교육기회균 등	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 1부(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 정원의 특별전형별 각 호의 모든 서류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4. 서류 발급방법

구분	발급안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민원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신청 ○ 홈에듀 민원서비스(링크) 이용 (공동인증서 필요,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 가까운 시·도 교육청 민원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신청 ○ 홈에듀 민원서비스(링크) 이용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기준년도 확인 후 발급)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증명서	○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신청 후 발급(해당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일정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가입국 확인(외교부 링크)	
학력인정 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에서 발급	
	미국	- 아포스티유확인서: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미국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링크):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중국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링크):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서울공자아카데미(링크):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중국 교육부 학력조회사이트(링크):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일본	- 아포스티유확인서: 고교졸업, 단기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인장증명서도 가능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학교인가확인서(우편신청, 링크)
	영국	- 주한영국문화원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온라인신청, 링크)
	뉴질랜드	-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뉴질랜드 정부 인가 교육기관 명단 확인 가능(링크) - NZQA 홈페이지에서 출신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 후 출력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링크):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영사공증-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링크): 고교졸업
	캐나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링크) -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라 주캐나다/주밴쿠버/주토론토/주몬트리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공증 - 고교 학력서류: 영사관 확인 바로 가능 - College/University 학력서류: 영사관 관할지역 Notary Public에서 공증 → 캐나다 정부기관의 Authentication → 주캐나다(캐나다 내 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공증
	필리핀	-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공증(링크) - 비사야(세부, 보홀, 일로일로, 보라카이 등) 지역은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영사공증
	베트남	- 아포스티유 비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영사공증만 가능(링크) - 베트남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확인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말레이시아	- 아포스티유 비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영사공증만 가능 - 공증 목록(링크):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mofa.go.kr) - 고교 학력서류: 출신학교에서 '서류발급확인서' 대사관으로 발송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College/University 학력서류: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절차 확인 → 말레이시아 외교부 영사확인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한글번역 공증본	○ 번역공증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한글번역과 공증 의뢰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번역공증사무소'로 검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개인) → 증명서 신청/발급 → [확인]버튼 클릭 → [신청]버튼 클릭 → 새로고침버튼 클릭하여 처리여부에 출력가능 표시 뜨면 [출력]버튼 클릭 → [인쇄] 또는 [PDF저장]버튼 클릭하여 동기우편 또는 파일 제출	

5. 제출 방법

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접수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주소 : 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연산동)

화신사이버대학교 7층 입학홍보처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지원 학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 바람

나.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함(단,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기한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추가합격자 선발

가.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함(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5학년도 3학년 별도 편입학 모집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명	학부명	학과명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산업체위탁생	군위탁생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 제7호)	교육기회균등	학사편입
사회서비스계열	글로벌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368	368	368	40	40	20	113
		실용외국어학과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상담복지학부	실용드론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복지경영학과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합계			368	368	368	40	40	20	113

※ 학과 폐과 : 영상콘텐츠학과

※ 상기 인원은 1차 모집인원이며, 2차 모집인원은 1차 모집결과에 따른 결원인원으로 산정

2.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공통	<p>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p> <p>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p> <p>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구분	지원자격	
정원외 특별전형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학, 관학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6호)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초중고 전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제7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급)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출서류

전형구분		제출서류		
공통		각 호 해당서류 제출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4년제 대학교 수료자(70학점 이상 이수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 : 7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와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자세한 서류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고)		
전형구분		제출서류		
정원 외 특별 전형	산업체 위탁	4대보험 납부 재직자	산업체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소정서식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링크)		
		- 재직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국세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 ※ 1차산업종사자(농·어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또는 어업인허가증명서 제출			
	군위탁	① 군복무확인서 1부 ② 추천공문(교육부로부터 추천 통보)		
	북한이탈 주민	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② 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대한민국 내 학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③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지역 시구청에서 발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6호)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이라도 학부(대학)과정 서류 제출(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대학교 출신자		①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일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추가서류		① 지원자 및 부모의 외국국적증명서 각 1부(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등) ②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제7호)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이라도 학부(대학)과정 서류 제출(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대학교 출신자	①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추가서류	① 외국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② 외국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성적증명서 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중 택 1하여 1부 ①, ②, ③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본(한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④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류 중 택 1 - 외국인: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 귀화자(국적법 제6조제2항)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특수교육 대상자	관할관청 발행 증명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교육기회 균등	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 1부(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학사편입	①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자의 경우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정원의 특별전형별 각 호의 모든 서류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를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4. 서류 발급방법

구분	발급안내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신청 ○ 출신대학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	
학점은행제 학습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링크)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통보 공문	○ 통일부 홈페이지 '학력 및 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민원 신청 → 교육부로 공문 → 교육부 회신 → 민원인에게 회신 공문 도착(2개월 소요)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4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가입국 확인(외교부 링크)	
학력인정 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에서 발급	
	미국	- 아포스티유확인서: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미국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링크):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중국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링크):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서울공자아카데미(링크):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중국 교육부 학력조회사이트(링크):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일본	- 아포스티유확인서: 고교졸업, 단기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인장증명서도 가능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학교인가확인서(우편신청, 링크)
	영국	- 주한영국문화원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온라인신청, 링크)
	뉴질랜드	-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뉴질랜드 정부 인가 교육기관 명단 확인 가능(링크) - NZQA 홈페이지에서 출신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 후 출력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링크):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영사공증-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링크): 고교졸업
	캐나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링크) -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라 주캐나다/주밴쿠버/주토론토/주몬트리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공증 - 고교 학력서류: 영사관 확인 바로 가능 - College/University 학력서류: 영사관 관할지역 Notary Public에서 공증 → 캐나다 정부기관의 Authentication → 주캐나다(캐나다 내 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공증
	필리핀	-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공증(링크) - 비사야(세부, 보홀, 일로일로, 보라카이 등) 지역은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영사공증
	베트남	- 아포스티유 비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영사공증만 가능(링크) - 베트남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확인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말레이시아	- 아포스티유 비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영사공증만 가능 - 공증 목록(링크):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mofa.go.kr) - 고교 학력서류: 출신학교에서 '서류발급확인서' 대사관으로 발송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College/University 학력서류: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절차 확인 → 말레이시아 외교부 영사확인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한글번역 공증본	○ 번역공증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한글번역과 공증 의뢰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번역공증사무소'로 검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개인) → 증명서 신청/발급 → [확인]버튼 클릭 → [신청]버튼 클릭 → 새로그침버튼 클릭하여 처리여부에 출력가능 표시 뜨면 [출력]버튼 클릭 → [인쇄] 또는 [PDF저장]버튼 클릭하여 등기우편 또는 파일 제출	

5. 제출 방법

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접수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주소 : 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연산동)

화신사이버대학교 7층 입학홍보처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지원 학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 바람

나.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함(단,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기한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추가합격자 선발

가.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입학 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함(입학 원서상에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5학년도 편입학(일반편입학) 모집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명	학부명	학과명	2학년	3학년
사회서비스계열	글로벌교육문화학부	실용드론학과	42	44
		한국어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상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복지경영학과		
합계			42	44

※ 학과 폐과 : 영상콘텐츠학과

2.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일반전형	<p>[2학년 편입학] ▶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1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 또는 2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3학년 편입학] ▶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3. 제출서류

전형구분	제출서류
일반전형	<p>각 호 해당서류 제출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4년제 대학교 수료자(35학점 이상 이수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 : 35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와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자세한 서류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고)</p>
	<p>각 호 해당서류 제출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4년제 대학교 수료자(70학점 이상 이수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 : 7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와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자세한 서류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고)</p>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학전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4. 서류 발급방법

구분	발급안내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신청 ○ 출신대학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	
학점은행제 학습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링크)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통보 공문	○ 통일부 홈페이지 '학력 및 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민원 신청 → 교육부로 공문 → 교육부 회신 → 민원인에게 회신 공문 도착(2개월 소요)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4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가입국 확인(외교부 링크)	
학력인정 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에서 발급	
	미국	- 아포스티유확인서: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미국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링크):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중국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링크):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서울공자아카데미(링크): 고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중국 교육부 학력조회사이트(링크):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일본	- 아포스티유확인서: 고교졸업, 단기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인장증명서도 가능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학교인가확인서(우편신청, 링크)
	영국	- 주한영국문화원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온라인신청, 링크)
	뉴질랜드	-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뉴질랜드 정부 인가 교육기관 명단 확인 가능(링크) - NZQA 홈페이지에서 출신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 후 출력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링크):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수료 및 졸업 - 영사공증-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링크): 고교졸업
	캐나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링크) -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라 주캐나다/주밴쿠버/주토론토/주몬트리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공증 - 고교 학력서류: 영사관 확인 바로 가능 - College/University 학력서류: 영사관 관할지역 Notary Public에서 공증 → 캐나다 정부기관의 Authentication → 주캐나다(캐나다 내 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공증
	필리핀	-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공증(링크) - 비사야(세부, 보홀, 일로일로, 보라카이 등) 지역은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영사공증
	베트남	- 아포스티유 비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영사공증만 가능(링크) - 베트남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확인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말레이시아	- 아포스티유 비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영사공증만 가능 - 공증 목록(링크):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mofa.go.kr) - 고교 학력서류: 출신학교에서 '서류발급확인서' 대사관으로 발송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College/University 학력서류: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절차 확인 → 말레이시아 외교부 영사확인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한글번역 공증본	○ 번역공증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한글번역과 공증 의뢰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번역공증사무소'로 검색)

5. 제출 방법

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접수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지원자 유의사항 참조)

▶ 주소 : 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연산동)

화신사이버대학교 7층 입학홍보처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지원 학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 바람

나.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함(단,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기한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추가합격자 선발

가.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입학 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함(입학 원서상에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